

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議案 番號	
----------	--

發議年月日：1997. 9.

發議者：外 議員人

提案理由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시기에 일본군이 직접 나이 어린 여성을 강제동원하여 전쟁터의 일본군 성노예로 취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이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증언과 각종 문서, 일본정부의 부분적인 시인 등으로 명확해졌다. '96년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법률가위원회 등 권위있는 국제기구들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비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정함이 없이 범죄자를 소환·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과 세계 각국의 법률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나찌전범이 지금까지 당사국의 피해와 관계없이 세계도처에서 처벌되는 것도 이러한 국제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나찌전범의 경우와는 달리 소위 ‘위안부’로 알려진 성노예제도를 위시하여 일제에 의해 행해진 731부대 생체실험, 학살, 고문, 강제노동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하여 1910年에서 1945年의 기간동안 日本帝國主義와 그 軍隊, 同盟國, 占領國의 國家 등의 指示와 協力下에 人種, 民族, 國籍, 宗教, 政治的 見解 등을 이유로 어떠한 사람을 虐殺, 虐待하는 일을 指示하거나 煽動하는데 참여한 外國人은 처벌되어야 한다. 지난 해 12월 미 법무성이 731부대 생체실험관계자와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 관계자에 대한 출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일제에 의한 최대의 피해국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한-일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피해국 국민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

이에 일본군전범에 대한 처벌의 가장 1차적인 방안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련 범죄자들의 入國禁止등의 조치를 하고자 함.

主要骨子

가. 1910年 8月 29日부터 1945年 8月 15日까지 日本政府, 日本政府와 同盟關係에 있던 政府, 日本政府의 優越한 힘이 미치던 政府의 指示 또는 連繫下에 人種, 民族, 宗教, 國籍, 政治的 見解등을 이유로 사람을 虐殺・虐待하는 일에 관여한 外國人의 入國을 금지함(案 第11條第1項第7號).